

강원특별자치도

시정·경고

제 목 공가·특별휴가 등 복무관리 부적정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① ○○소방서 ○○○○○○○○○○○○(前 ○○소방서 ○○○○○○) 소방○ ○○○○

② ○○소방서 ○○○○○○○○○○○○(前○소방서○○○○○) 소방(前소방) ○○○○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휴가 등 복무관리 및 보건 안전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검진과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에 따른 특수건강검진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공가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및 「소방공무원 복무 규정」 제8조의2에 따라 소방공무원이 다음 각 호1)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
- 1) 1. 「병역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병역판정검사·소집·검열점호 등에 응하거나 동원 또는 훈련 참가
 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검찰 또는 그 밖의 국가기관에 소환되었을 때
 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 / 4. 승진시험·전직시험에 응시할 때
 5. 원격지(遠隔地)로 전보 발령을 받고 부임할 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강검진 또는 건강진단을 받을 때.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같은 날에 받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 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또는 정밀건강진단
 - 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에 따른 건강검진
 7. 「혈액관리법」에 따라 헌혈에 참가할 때
 8.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2조제5호 또는 「소방공무원 교육훈련규정」 제38조제5호에 따른 외국어능력

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해야 하고,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8장 휴가, 4. 휴가종류별 실시방법, 다. 공가, (3) 공가의 사례에는 징계·소청·행정소송 등에 있어서 업무담당 공무원의 출석은 출장 처리하고, 당사자 및 참고인은 공가 처리하며 그 내용이 공직신분과 무관한 사항은 연가를 활용해야 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특별휴가 사용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2]²⁾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도 불구하고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하여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복무 조례」 제14조에 따라 도지사는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별로 다음 각 호³⁾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

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때

9. 올림픽, 전국체전 등 국가 또는 지방 단위의 주요 행사에 참가할 때
10.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11.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교섭위원으로 선임(選任)되어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에 참석하거나 같은 법 제17조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에 따른 대의원회(「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노동조합의 대의원회를 말하며, 연 1회로 한정한다)에 참석할 때
12. 「검역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오염지역 또는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오염인근지역으로 공무외출장, 파견 또는 교육훈련을 가기 위하여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검역감염병의 예방접종을 할 때

2) 경조사별 휴가 일수표

구분	대상	일수
결혼	본인	5
	자녀	1
출산	배우자	20일(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입양	본인	20
사망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5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3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3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3

3)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

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2023. 7. 21. 강원특별자치도 총무과에서 마련한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 지침4)'에 따라 2023. 7. 26.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에서 마련한 소방 적용기준5)에 따르면 2023. 8. 1.부터 분할횟수 제한 삭제, 1회 사용 시 최소 3일 이상 실시, 해당 구간 휴가 미사용 시 다음 구간으로 이월 가능, 10년 이상 20년 미만 공무원에 대한 휴가 일수 5일 추가, e-사람 복무시스템을 활용한 복무 신청 방법, 소방기관별 복무관리부서의 장기재직휴가 내역 관리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였다.

따라서 소방공무원이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사용할 때에는 건강검진에 직접 필요한 기간을 공가로 승인받아 사용하고,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징계위원회의 당사자로 출석할 경우 공가를 사용해야 하며, 규정에 맞는 기간만큼의 경조사 특별휴가를 사용하고,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할 경우 재직기간별 사용일, 분할횟수, 1회 최소사용일수 등의 지침을 준수하여 휴가를 사용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공가 사용 부적정

감사대상 기간 ○○소방서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 ☆☆☆은 0000. 0. 0. 현안업무 격려 특별휴가일에, 소방♡ ♡♡♡은 0000. 0. 00. 당직휴무일에 각각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에도 0000. 0. 0.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소방서 ○○○○○○○○○○ 소방☁ ☁☁☁은 0000. 0. 0. 00:00경 ◆◆◆ ●●●에서 발생한 △△△ ◎◎◎◎와 관련하여 ◇◇◇ ㉪㉪ ㉫㉫ 건으로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4) 도 총무과-4160(2023.7.21.)호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지침 송부」
5) 도 소방행정과-3142(2023.7.26.)호 「강원특별자치도 장기재직 특별휴가 시행 지침 개정에 따른 소방 적용기준 알림」

0000. 0. 00. ○○소방서 ☆☆☆☆에서 열린 ♥♥♥♥♥에 ♣♣♣♣ 대상자로 출석하였는데 공무와 관련된 사유로 ◆◆◆◆◆의 당사자로 출석할 경우 공가를 사용하여야 함에도 관내출장으로 복무를 처리하였다.

나. 특별휴가 사용 부적정

감사대상 기간 ○○소방서 휴가 등 복무관리 현황을 확인한 결과 소방◎ ◎◎◎은 △△ ◆◆을 위한 특별휴가를 0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규정된 5일보다 0일을 초과하여 사용한 사실이 있다.

또한 ○○소방서 ○○○○○○ 소방◎ ◎◎◎은 장기재직 특별휴가 사용 시 1회 최소 3일 이상 사용하도록 하는 지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0일(0000. 00. 00. △△)만 사용한 사실이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소방◇ ◆◆◆은 0000. 0. 0. 현안업무 격려 특별휴가일에 건강검진을 실시하였음에도 주말과 ㉸㉸㉸㉸㉸ 사이 평일인 0000. 0. 0. ●●●에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소방◎ ◎◎◎은 0000. 0. 00. ♣♣♣♣♣에 건강검진을 이미 실시하였음에도 주말과 ☆☆☆☆☆☆ 사이 평일인 0000. 0. 0. ♥♥♥에 건강검진을 위한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소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 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그 비위의 정도가 「같은 법」 제78조 징계사유에는 미치지 못하는 대신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경고」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은

① [시정] 건강검진 공가를 부정하게 사용한 소방Ⓜ ⓂⓂⓂ, 소방● ●●● 및 경조사 특별휴가를 초과 사용한 소방◎ ◎◎◎에게 지급한 연가보상비 000,000원을 회수하여 세입 조치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부당한 휴가 사용을 방지할수 있도록 소속직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조치결과와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②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① [경고] 위 관련자 소방♡ ♡♡♡을 「경고」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다. 당부사항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경고를 받은 공무원 등에 대하여는 처분일로부터 1년간 근무성적평정, 전보인사, 교육훈련, 성과상여금 지급, 표창, 포상대상자 추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 등에 있어 불이익을 줄 수 있고, 1년 이내에 2회의 경고를 받은 자가 마지막 경고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다시 경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의결을 요구할 수 있으니 평정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부서경고·권고

제 목 구조 현장 업무 관리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 ○○○○○○○○ ·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 · ○○○○○○○○)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위해동물 포획을 목적으로 마취제를 구매 및 보유하면서 포획 활동 중 마취제를 사용하였다.

또한, ○○소방서(○○○○○○○ · ○○○○○○○○)에서는 다양한 재난 현장에서의 신속한 상황 파악과 구조대상자 인명검색 등 선제적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해 활용되는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관리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가. 동물포획용 마취제 사용 및 구조용 총기류 운용 업무 관련

「소방기본법」 제16조의3에 따르면, 소방청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고가 접수된 생활안전 및 위험제거 활동(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

황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에 대응하기 위하여 소방대를 출동시켜 위해동물, 벌 등의 포획 및 퇴치 활동 등의 활동(이하 "생활안전활동"이라 한다)을 하게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0조에 따르면,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등 외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34조·제39조에 따르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유실·유기동물 등을 발견한 때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동물보호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등의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제8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동물보호법」 제39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참새 등 조류와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농·림·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멧돼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소방본부(구조구급과)에서는 동물 포획(퇴치)용 마취제 사용과 관련하여

「2022년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⁶⁾을 배포하였으며, 「2024년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역량강화 추진과제 개정사항 등 알림」⁷⁾을 통해 최신화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지침”을 시달하였다. 특히 「2022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⁸⁾ 소방본부 지침에 따르면 소형동물(개, 고양이 등)에 적응성이 있는 마취제(렘폰, 자일라진 등)를 추가 구매 후 사용하고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씩시팜, 석시콜린, 석시닐콜린)는 현장 상황에 맞춰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강조하였다.

또한 마취제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2023·2024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⁹⁾ 소방본부 지침에 따르면 사용 중인 모든 마취제는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시스템 입력 관리 시 1개 품목은 1개로 누적 입력 관리하도록 지시하였고, 마취제가 필요한 현장 활동 시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마취제 사용가이드 등을 숙지하고, 마취제 사용 시 견주 등의 동이가 가능한 상황은 동물용 마취약품 사용 동의서 작성(또는 녹취) 후 현장 활동을 하라는 지침을 시달하였고, 특히 「(SOP 321)위해동물 포획 대응절차」에 따르면 ‘현장지휘관은 마취제 사용 시 동물에게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사망)을 신고자 또는 관계자에게 사전 고지하고 마취 약품 사용 동의를 구한다’라고 되어있다.

그리고 구조용 총포류는 구조대별 관리책임자(정·부)를 지정하여 총기류 반·출입 시 관리책임자 승인하에 사용하고 “총기류 관리대장”에 기재하도록 되어있고, 총기류 관리사항 등에 대해서 월 1회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

6) 강원도 방호구조과-1593(2022.1.17.)호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제정 알림」

7) 강원도 구조구급과-20558(2024.12.9.)호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역량강화 추진과제 개정사항 등 알림」

8) 강원도 방호구조과-3322(2022.2.4.)호 「2022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

9) 강원도 구조구급과-1251(2023.1.17.)호 「2023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

강원도 구조구급과-11327(2023.12.20.)호 「2024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

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 ○○○○○○○, ○○○○○○○○○)에서는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포획 출동 시 적응성 있는 마취의약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마취제 및 총기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했어야 하고, 마취제 사용 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 입력을 철저히 하여야 하고, 마취제가 필요한 현장 활동 시 견주 등의 동이가 가능한 상황에서는 동의서 작성 후 안전하게 현장 활동을 하여야 했다.

나.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관리 업무 관련

「항공안전법」 제131조제2항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무인비행장치를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수색·구조, 화재의 진화, 응급환자 후송 등 공공목적으로 긴급히 비행(훈련 포함)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 방안¹⁰⁾을 마련하여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 제3조·제20조·제21조·제24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무인비행장치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무인비행장치 관리 및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관리 및 운용계획에는 무인비행장치의 전담부서·운용인력·도입계획·예산확보·교육훈련·점검 및 유지관리·안전관리 방안 등 운용에 필요한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하며, 운용자 등¹¹⁾은 구분¹²⁾에 따라 무인비

10)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3조의2(국가기관등 무인비행장치의 긴급비행)

② 법 제131조의2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무인비행장치의 관리 및 점검 계획
2. 비행안전수칙 및 교육계획
3. 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
4. 무인비행장치 사고로 인하여 지급할 손해배상 책임을 담보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피해자 보호대책
5. 긴급비행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11) 무인비행장치를 통제하거나 직접 운용하는 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

12) 소방 무인비행장치 정기점검 등

1. 일일점검: 배터리 충전상태, 기체 및 임무장비의 외관·작동상태
2. 주간점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점검
3. 특별점검: 특수한 결함이나 고장 등으로 인하여 성능이 저하되거나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고 인정되는

행장치를 점검하여야 하고, 무인비행장치의 비행기록을 무인비행장치 운용일지에 기록하며, 매월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소방관서에 3년간 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규정」 제19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운용자 등의 조종기술 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월 2시간 이상 비행이론·항공관련 법령·기체의 제원 및 성능·현장에서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의 이론교육과 월 4시간 이상 기체 적응 비행 및 수직 이착륙·비상시 조치 요령·공중조작 및 지표 부근에서의 조작·기체 점검 및 정비 요령 등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실기교육은 현장 활동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운용자 등에 대해 월 2시간 이상의 이론교육과 월 4시간 이상의 실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했고, 기체에 대한 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주간점검을 실시하여야 했고, 매월 월간 운용실적을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동물 포획용 마취제 사용 부적정

○○소방서(○○○○○○○)는 「2022년~2024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대책」 소방본부 지침에 따라 개·고양이에게 적응성이 있는 마취제(렘푼, 자일리진 등)를 구매 후 사용하고 치사율이 높은 마취제(씩시팜, 석시콜린, 석시닐콜린) 사용을 최소화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침 시달 이후에도 총 0회에 걸쳐 유해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개 포획 시 적응성이 없는 마취제(씩시콜린)를 사용하였다.

다만, ○○소방서(○○○○○○○)에서는 썩시콜린에 대하여 0000년 0월 0일 일괄

경우에는 전문인력과 점검 장비를 갖춘 기관·단체, 전문업체 등에 의뢰하여 점검

폐기함으로써 이후 적응성 있는 마취제를 사용하도록 주의하였다.

나. 마취제 유지관리 및 동의서 징구 소홀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각종 마취제 입·출고 상황 발생 시 00건의 소방장비관리시스템 미입력 사항이 확인되었고, 대부분 0000년 0월 이전 사용건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마취제가 필요한 현장 활동 시 견주가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작성된 동의서는 00건 확인되었는데 특히 소유자 여부와 상관없이 감사 대상 기간 중 작성된 동의서 징구는 없었다.

다. 총기류 유지·관리 업무 소홀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2022년~2024년 동물 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대책」 소방본부 지침에 따르면 총기류는 관리책임자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하고 “총기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총기류 관리 사항 등 안전교육을 팀별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서(○○○○○○○○○○)는 0000년 0월 이후 총기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 내역이 없었고, 총기류안전관리 교육 관련하여 ○○○○○○에서는 0회, ○○○○○○○○○○에서는 00회 미실시 하였다.

라. 소방 무인비행장치 점검 업무 소홀

○○소방서(○○○○○○○·○○○○○○○○)는 소방 무인비행장치를 현장에서 필요할 때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매주 기체 외관 상태, 위성항법장치(GPS) 수신 상태, 모터 작동상태, 변속기 상태, 조종기 연결 상태 등을 점검하고 내부 결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방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주간점검을 감사 대상 기간 중 00회만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감사 대상 기간 중 약 000회 주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약 000회 미실시 하였다.

또한, 매월 소방 무인비행장치에 대한 운용실적을 기록하여 「같은 규정」 [별지 제3호] 서식을 참고하여 소방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특정한 기간 동안(0000 00월~0000년 00월) 총 00회 누락되었다.

마. 소방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 업무 소홀

○○소방서(○○○○○○○·○○○○○○○)는 월 2시간 이론교육(비행이론, 기체의 성능, 제원, 항공관련 법령 등)과 월 4시간 실기교육(비상 시 조치요령 등)을 실시하여야 했다. 하지만 운용자 등(통제관, 조종자, 부조종자)을 대상으로 개인별 확인한 결과 ○○○○○○○ 드론 담당 연인원 000명 중 이론교육에 미달한 인원이 000명, 실기교육에 미달한 인원이 000명 확인되는 등 운용자 조종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시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개포획 시 적응성 없는 마취제(씩시콜린)을 0회 사용하였고, 각종 마취제 입·출고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00건 미입력하였으며, 소유주등 관계인이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00건의 동의서를 징구하지 않았으며, 월간 총기류 안전교육을 0회 미실시 하였고, 무인비행장치 주간점검을 000회 누락하였으며, 월간 운용실적 보고를 00회 누락하였고, 무인비행장치 교육훈련시간 관련 이론교육 000명, 실기교육 000명이 미달되는 등 동물포획용 마취제 사용 및 구조용 총기류 운용 업무,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업무를 지속적으로 누락하며 소홀히 하였다.

○○○○○○○○○○○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총기류 사용 시 관리자 승인하에 사용해야하며 특히 총기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0000년 0월

후 총기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한 내역이 없는 등 구조용 총기류 유지·관리업무에 소홀히 하였다.

위와 같은 각 행위는 「동물보호법」,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등의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¹³⁾를 위반하였지만 개인의 문책보다는 부서 전체의 문제라고 판단하여 「(소방)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징계책임 을 물을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지만, 비위의 정도가 주의보다 중하여 과오를 반성 하도록 엄중히 훈계할 필요”가 있는 「부서경고」 처분사유에 해당한다.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부서경고] 「동물보호법」, 「강원특별자치도 반려동물 등의 보호 및 학대방 지 조례」, 「위해동물 포획 현장활동 매뉴얼」,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규 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동물포획용 마취제 사용 및 구조용 총기류 사용 업무와 소방 무인비행장치 운용 업무에 대해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 ○○○와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안전관리 대책 알림」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구조용 총기류 유지·관리 업무에 대해 부적정하게 업무 처리한 ○○○○○○○○○○에 「부서경고」 처분하니, 규정에 맞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라며, 기관·부서 경고 처분을 받은 기관·부서에 대해서는 특별감사 대상기관·부서로 지정하 여 특별감사를 실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은

13)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① [권고] 동물포획용 마취제 및 총포류 사용 관련 관리·운영상 미흡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토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소방관서에 서 마취제 및 총포류 관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특별자치도

통보·권고

제 목 공기충전기 안전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화재, 구조·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 활동 시 활용되는 공기호흡기 및 잠수 용기의 충전을 위한 공기충전기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호흡기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7]14)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호흡보

14)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 ① 공기충전기는 제1호 서식에 따라 주 1회 이상 점검하되 점검주기와 점검방법은 제조사 권장기준을 따를 수 있다.
- ② 공기충전기는 주요장치의 원활한 작동을 위하여 1주일에 최소 30분 이상을 가동하여야 하며, 공기충전기 내부는 항상 대기압보다 높게 유지되어야 한다.

호장비란 공기충전기, 공기호흡기 등 소방활동을 위하여 호흡용 압축공기를 제조하거나 저장하여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호흡보호장비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5. 공기 품질 검사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공기충전기에서 제조된 호흡용 공기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공기 품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¹⁵⁾에 따르면 공기충전기 시설 안전관리에 대하여 연 2회 상·하반기로 나누어 공기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고, 검사방법으로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KFI)에 의뢰하도록 안내하였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르면 공기충전기 시설은 매 2년마다 1회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며,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 제19조에 따르면 매 6개월마다 1회 자율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정기검사를 받으면 도래한 자율검사는 생략하도록 되어 있고, 모든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KGS)에 의뢰하여 방문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별표 3], 「소방장비 관리법」 시행령 제28조, 「소방장비관리업무 처리기준」 [별표7]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충전실의 운영을 위하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적합한 안전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에서 소방기관 같은 소규모 공기충전시설¹⁶⁾ 안전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 책임자 특별교육 이수자'¹⁷⁾로 선임 가능하며 공기충전기가 설치된 기

①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15) 소방장비회계과-7444(2023.05.18.)호

16) 1시간당 처리능력 60㎡ 이하

관별로 1명을 선임하도록 하였는데, 강원특별자치도 소방서(안전센터)는 교대근무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팀당 1명씩 선임¹⁸⁾하도록 강조 시달하였다.

그리고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별표15]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및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세부 매뉴얼」 따르면 공기충전기 안전교육¹⁹⁾에 대한 주기 및 교육실무자·대상자를 명시하였다.

따라서 ○○소방서에서는 공기충전기 시설 주간점검을 통해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충전원 대상 정기교육(월 1회)과 재해발생 교육(분기 1회), 비상대응 훈련(반기 1회)을 통해 전 직원은 긴급사태 시 조치 및 통제요령을 숙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소방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공기충전기 시설에 대한 주간점검, 충전원 교육(월 1회), 재해발생 교육(분기 1회), 비상대응훈련(반기 1회) 실시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점검 및 교육, 훈련을 일부 부서에서 부적정하게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각 시기별 교육 및 훈련이 실시되지 못하여 공기충전기 시설 안전관리에 대한 전 직원들의 의식 함양 부족이 발생할 수 있고, 특히 비상상황 발생

17) 한국가스안전공사(KGS) 사이버 교육(1일 6시간) 이수자

18) 최초 신고일로부터 30일 이내, 변경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선임 / 미선임 시 관계 법령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

19) 제8장 충전원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제34조(교육대상 및 방법)

① 교육대상은 소방기관 소속 충전원으로 하고 정기교육과 특별교육 대상으로 구분한다.

② 정기교육은 충전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실시하며 특별교육은 신규 충전원 또는 특별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안전관리책임자가 인정하는 충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③ 안전관리책임자는 교육책임자로서 교육을 실시하며 교육교재 및 자료를 작성·비치한다.

④ 교육과정은 매 분기별로 1회 이상 재해발생에 대비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며, 안전관리총괄자 또는 부총괄자는 예상된 재해규모에 따른 긴급조치훈련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이를 장려한다.

제40조(위해발생시의 조치 및 통제)

① 긴급사태시의 조치 및 통제요령은 별표 1과 같으며 비상훈련은 6월에 1회 이상 교육 시에 실시한다.

시 신속하게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판단 없음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통보]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및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공기충전시설에 대한 각종 검사 및 교육·훈련이 누락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 ① [권고] 2023년 5월 소방본부 소방장비회계과에서 시달한 「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²⁰⁾에 준하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시어 공기호흡기 시설뿐 아니라 전반적인 호흡보호장비 관리 기준을 재정립하여 일선 소방서에서 충분히 숙지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소방장비회계과-7444(2023.05.18.)호

강원특별자치도

통보·권고

제 목 잠수장비(스쿠버) 용기 유지·관리 업무 소홀

기 관 명 ○○소방서

관 계 부 서 ○○○○○○·○○○○○○○

관 련 자

내 용

1. 업무 개요

○○소방서(○○○○○○○·○○○○○○○○)에서는 00개의 잠수장비 용기를 보유하면서 수난 구조 현장 및 잠수 수준 유지 훈련 등에 활용되는 잠수장비 용기 유지·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2. 관계 법령 및 판단기준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수난 장비 등 보유하고 있는 소방장비를 소방청장이 정하는 안전관리기준에 맞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 제15조, 제18조에 따른 [별표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2. (용어의 정리)를 통해 호흡보호장비에 잠수장비(부력조절기, 용기, 호흡조절기)가 포함된다고 하였고, 고압용기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 적용받는 고압용기 중 공기호흡기 용기와 잠수장비 용기를 말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 기준」 제15조제6항에 따르면 소방기관의 장은 호흡보호장비를 [별표7]²¹⁾의 기준에 따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외부 전문기관 또는 전문업체에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22] 용기 및 특정설비의 재검사기간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및 잠수장비 용기는 이음매 없는 용기에 해당하여 신규검사 후 경과 연수가 10년 이하인 것은 5년마다, 10년을 초과한 것은 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고,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8. (정기검사)에 따라 고압용기는 제조 검사를 받은 날부터 매 3년마다 1회 이상 위생검사 및 세척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강원도 소방관서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 계획」²²⁾에 따르면 공기호흡기 용기는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 [별표1]²³⁾ 기준상 내용연수가 10년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되어 있고, 용기 재검사 관련하여 최초 제조검사 후 3년차(위생검사), 5년차(재검사), 8년차(위생검사), 10년차(재검사)를 하도록 안내하였다.

따라서 ○○소방서(○○○○○ · ○○○○○○)에서는 잠수장비 용기를 신규검사일 또는 최종 재검사일부터 5년 또는 3년마다 위생검사 및 재검사를 실시하여 고압가스 등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안전확보 및 성능이 유지되도록 관

21) [별표 7] 호흡보호장비 안전관리에 관한 기준 7. 호흡보호장비의 유지 및 관리

④ 고압용기에 충전된 호흡용 공기는 매 6개월마다 공기를 배출한 후 새로운 공기를 충전하여 보관한다.

⑦ 호흡보호장비를 세척·충전·수리 및 불용 등을 실시한 경우에는 「소방장비관리법」 제40조에 따라 구축된 “소방장비관리시스템”에 그 관리 이력을 입력한다.

22) 소방장비회계과-7444(2023.05.18.)호

23) 다. 구조장비(대분류) - 수난구조장비(중분류) - 잠수장비(소분류) - 스쿠버 공기통(10년)

라. 보호장비(대분류) - 호흡장비(중분류) - 공기호흡기(소분류) - 공기호흡기 용기(10년)

리하여야 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점

가. 잠수장비(스쿠버)용기 검사 업무 소홀

○○소방서(○○○○○○○·○○○○○○○○)에서는 감사 대상 기간 중 잠수장비 용기 위생검사 및 재검사 세부 현황을 확인한 결과 잠수장비 용기 총 00개 중 0차 위생검사 기준일을 초과하여 미실시 한 내역이 0건, 0차 위생검사 기준일을 초과하여 미실시한 내역이 0건 확인되었다

그 결과 잠수(스쿠버)용기가 호흡보호장비이면서 구조장비임에 따라 관리체계상 각종 검사 누락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일반 화재진압용 공기호흡기 용기에 비해 관리가 소홀하게 이루어질 우려가 있다.

4. 관련자 의견 및 판단: 의견 없음

5. 관련자 신분상 처분에 대한 판단: 판단 없음

6. 조치할 사항

가. ○○○○○○○은

- ① **[통보]** 잠수장비(스쿠버) 용기가 구조장비로 분류됨에 따라 일반 공기호흡기 용기와 함께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태를 파악하여, 호흡보호장비 운용 관련 규정을 토대로 잠수장비 용기가 각종 위생·재검사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잠수장비 내용연수를 면밀히 살피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운용하시길 바라며, 이를 통해 소속 직원들에 대한 교육 및 업무연찬에 매진하시기 바랍니다.

나. ○○○○○○(○○○○○○)은

- ① **[권고]** 스쿠버 용기의 경우 호흡보호장비의 성격을 갖고 있음에도 구조장비로 분류되어 용기 위생검사, 재검사, 불용 처리 등 관리·운용상 미흡한 점이 확인됨에 따라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에 준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모든 소방관서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스쿠버 용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